

1주차 - 독해의 기본은 문장, 결국 독해는 당겨 읽는 것이다.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36.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3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3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겸비(兼備)하면
- ② 구비(具備)하면
- ③ 대비(對備)하면
- ④ 예비(豫備)하면
- ⑤ 정비(整備)하면

1주차 - 글의 기본은 당겨 읽는 것이다.

2017.09 [35~39] 사단과 법인격, 그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

총평

- 문제 해결 / 빌드업
- 정의 확보
- 당겨 읽기 / 다른 말 같은 뜻
-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위계)
- 조사에 대한 민감함

이 지문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초반에 제시된 정의들을 정확하게 확보하며 이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진행되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글의 거시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본적인 제시된 정의들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그에 대한 위계(범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제시된 문장을 정확하게 당겨 읽는 것. 조사에 대한 민감함을 갖추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

해당 지문을 통해 당겨 읽기 등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부분에 반응하는 것에 중요성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권리 능력의 정를 제시하며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권리 능력의 정의를 제시해주며 지문을 시작했으니 필히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tip - 어휘 자체를 통한 이해

실제로 어휘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납득할 부분을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권리 능력 역시 <권리+능력>이므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도 있죠.) 능력이구나~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휘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납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사람은 '선천적'(=저절로)으로 권리 능력을 보유하고 '영원히'(=생존 내내) 보유합니다. 선천적, 영원함 등은 무조건 확보해야 하는 내용으로 <권리 능력 = 선천적 + 영원>이라는 정리가 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선천 / 후천(단정적 / 개연적)

'불변, 완전, 모든'과 같이 100%를 표현하는 '단정적 표현' + 선천적 '가변적, 불완전'과 같이 100%가 아님을 표현하는 '개연적 표현' + 후천적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지문 독해 시에 핵심에 결부된 정보든, 부가적으로 제시된 정보든 **응당 민감하게 처리해야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범주 파악, 내용 이해에 필수적이고, 곧잘 문제화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시로 적어놓은 표현들은 매우 일부입니다.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소유권의 주체) / 권리와 의무를 가짐.(=타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진다.)> 앞서 권리 능력의 정의를 정확하

게 파악했다면, 이는 재진술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앞선 내용의 재진술(다른 말 같은 뜻)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체감 정보량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도 '요건'(조건)을 충족하면 법적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권리 능력의 뜻을 당겨 읽어보면, 단체도 요건을 갖추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요.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의가 있다면 그 의미를 살리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체 중에는 ㉠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 운영 기구를 두어, ㉣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 ㉡, ㉢, ㉣)을 **사단성**이라 한다.

단체 중 하위 개념으로 사단의 성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는 것을 보니 분명 중요한 개념**이겠네요. <사람들이 목적 가지고, 독자적 실체, 운영 기구 있음, 독자적 실체이니 구성원 관계없이 존속> 사단의 성질(=사단성)을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사원(사단의 구성원)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앞서 사단은 구성원과 구별되는 독자적 단체라 했으니, 사단은 사원(=구성원)과 별개의 존재로 취급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단이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는 사단 법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tip - 조건은 답을 결정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지문에서 '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고 지문에 제시가 되었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선지에 나오면 그건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그런 선지에 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도 지문에서 이렇게 '조건'이 제시됐을 때 정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해를 계속 진행한다면 지문에서 갑자기 상충된다 느끼는 부분이 나오고, 문제 풀이에서 남시 선지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조건도 전제, 예외를 만드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선 딱 하나 '조건'이 나오면 생각을 정리한 뒤 독해를 진행한다는 독해 습관을 갖추시길 권장합니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면 나머지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의미겠네요. 그리고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일단 **지문에서 대놓고 엄격히 구별한다 했으니** 일단 우리도 둘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 사후적까지 아닌데 코멘트

법인은 사단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니 법인도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법인은 애초에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

적 실체로 구성되는 것이니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권리 능력은 구분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앞서 제시된 정보(법인이 사단의 하위 개념이라는 것+사단의 특성 = 독자성)를 확보했다면 응당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사단 법인의 의무)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사원 개인의 의무)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권리 능력(=권리와 의무)이 사람과 법인은 아예 구분해줘야 하니 사단 법인이 빚을 저도, 사원 개인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앞선 정보를 구체적 예시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앞 내용을 통해 이해를 하며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를 사단 법인의 구체적 예시로 제시해줬습니다. 그냥 <회사는 사단 법인의 일종> 정도로 납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회사도 사람들 모여 있고, 사원 개인과는 분리되어 있으니 상식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부분입니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사단 법인의 사원)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사단 법인의 대표적 유형(회사의 대표 유형)인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는 사단의 사원 정도이겠네요. 이렇게 앞선 정보를 통해 표현이 달라도 유사한 뜻을 파악하는 습관 자체가 잡혀야 합니다.** 주주들이 주식만큼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내용이니 자연스럽게 납득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 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주식 회사는 사단 법인의 유형이고 사단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인 주주로도 회사가 설립이 된다면 이걸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 것(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혼자임)인데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시된 사단의 개념(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니)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주식 회사가 사단의 일종(상위 범주 하위 범주)이라는 것을 상기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상위 범주 / 하위 범주
지문 독해 시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인식하지 않고 독해해서 **상위 범주의 개념을 하위 범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독해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위 범주의 개념을 추가적인 언급이 없다면 하위 범주도 받는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단체 >사단>사단 법인>회사
cf) 필수아미노산>제한아미노산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사단은 앞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도 유지가 될 것이고, 이것도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 사단이 되겠네요. 이 역시 사단의 개념(구성원 가입 탈퇴와 무관)을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됩니다. 혼자밖

에 없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인 주주 = 대표 이사> 이와 같이 제시된 그대로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이처럼(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됨)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회사와 개인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인 주주 혼자 회사를 다루면 이게 그 사람과 회사가 분리되었다고 보기 모호해집니다. 개인과 회사의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tip - 당겨 읽기
해당 부분에서 "이처럼"에 대한 내용을 당겨 읽은 사람과 당겨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항이 36번입니다.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읽는다면
=>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면."
이와 같이 독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 =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처럼"이라는 지시어의 해당하는 내용을 당겨 읽어 <대표 이사 =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 같은 뜻)

해당 시험에서 "대표 이사가 회사를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선지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사님들은 사람인데 기관이라니 ㅋㅋ 당연히 아니지"라고 생각해 상당히 오답률이 높게 나온 문항입니다.

항상 지시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추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법인)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법인은 회사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대표 이사)이 되면 법인(독립된 주체)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영업으로 보이겠네요. 앞선 문장의 재진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구성원의 인격과 법인격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네요. 앞서 제시된 정보가(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모호해지는 상황) 문제의 '원인'이겠네요. 이 정도를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상법상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입니다. 당연히 이런 '~만'과 같은 보조사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빌드업
지문을 읽을 때 가끔 음? 왜 이 얘기가 나오지? 하는 지문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글의 논점을 잘못 잡고 있는 등의 오독을 하고 있어 글을 읽다 음?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독해를 잘 하고 있다해도
이 지문에서도 문제가 있다더니 그에 직결되는 정보를 바로 제시하지 않고 다른 정보들을 먼저 제시합니다.
하지만 글을 조금 더 읽어보니 뒤에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글을 읽으실 때 이때 이런 느낌에 당황하셔서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대표 이사는 <대표+이사>이니 이사 중 한 명이겠죠? 그리고 대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입니다. 앞서 제시된 내용을 잘 당겨 읽었다면(이처럼~) 대표 이사가 이사회 선출 기관이라는 것을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의 선임과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여러 용어들이 나오며 각각의 기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업해준 정보들을 이해했다는 점을 토대로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이 진행될 것입니다.

- 코멘트

CD 드라이브 지문과 같이 보면 좋은 구간입니다. 구성 요소들에 대한 빌드업(이사회만 = 업무 기관, 대표 이사 = 선출 기관, 선임+보수 = 주주 총회) 이후 문제 상황에 대한 본격적 논의로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출을 통해 스스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앞서 제시한 구성 요소들을 다 자기 맘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금전적 권리)과 분리되어야 하는 주주(사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들을 파악했다면, <혼자 있으면 저거 다 혼자 하니까 지 맘대로 하네?> 정도로 이해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 문제 해결 구조

지문의 구조에만 매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글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거시적인 흐름을 잡는 것에 있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원인'들이 제시되어 있으니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해 문제의 '원인'에 맞춰 해결된다는 인식을 갖추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원인)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문제 상황)가 발생하기도 한다.

회사 운영을 맘대로 운영하면 회사가 허울만 남게 되고,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회사의 운영이 개인 사업과 다를 게 없고, 회사가 허울만 남은 문제의 원인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보는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코멘트

문제 상황의 구체적 예시로 회사를 개인 사업처럼 굴리며 회사 이익을 일인 주주가 혼자 먹으면서 회사의 '권리'는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데, 막상 거래에서 책임질 사항이 되면 자신은 개인이지 회사가 아니라며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권리는 챙기며 의무는 피하려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예시를 떠올리는 것은 일정 수준의 배경 지식과 권리 능력 권리 + 의무라는 점을 통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

도로 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합니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문제의 원인 같은 상황)에 관련하여 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문제의 원인 같은 상황(사단 법인과 사원의 권리 능력 구분 안 되는)에 대한 해결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시됩니다.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면 주주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되니 문제의 원인(일인 주주가 권리는 탐하는데 의무는 회피)에 맞는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법인격 부인론)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다른 조항(권리 남용)을 통해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라고 대놓고 강조해줬으니 우리도 그에 맞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정말 사소한 팁

조사, 접속사, 강조 등 어떤 부분도 허투루 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만'이라고 대놓고 지문에서 강조를 해줬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수험생들이 그러나, 하지만, 반면 같이 역접의 느낌이 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민감한 반응을 하는데 특히, 가장 등과 같이 강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한 민감함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문에서 이런 강조 표현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갖춰버릇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권리는 다 빼먹으려 하는데, 의무는 피하려 하는 것은 법인 제도의 남용으로 취급합니다. 이걸 당연히 법인 제도의 남용이니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독해를 마무리했으면 충분합니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⑤

사단은 단체도 요건을 갖추 때 법으로 권리 능력을 주는 법인격을 갖춘 사단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구분됩니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즉 권리 능력을 주는 제도는 사단이 아닙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사단성은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입니다. 즉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둡니다.

② : 사단은 구성원인 사원으로 이루어지고, 사단의 일종인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됩니다. 즉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사원에 해당합니다.

③ : 권리 능력이 있으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얻는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 사단성 중 하나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코멘트

구체적으로 제시해준 정의는 확보해야 합니다.

36.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①

이처럼(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됨)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은 대표 이사 =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당겨 읽기가 핵심적인 선지입니다.

나머지 선지

② : 사단은 독자적 실체를 가지며, 일인 주식회사 역시 사단의 일종입니다. 즉 일인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일인 주식회사의 독자적인 권리입니다. 일인 주식회사 역시 사단의 일종(하위 범주)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주총회입니다.

④ : 주식회사에서 업무 집행 의결 기관은 이사회'만' 존재합니다.

⑤ : 사단성 중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함>을 고려하고,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여러 주주가 모여 설립한 회사도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당겨 읽기와,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념, 보조사에 대한 민감함 등 미시적인 독해 태도를 점검하기 좋은 문항입니다.

3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⑤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법인격이 없어졌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회사 발생 이익을 주주가 함부로 사용했다고 해서 법인격을 누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② :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 개인의 권리 능력과 단체의 권리 능력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이므로 ㉡는 사원 개인은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단 법인이 진 빚은 사단이 가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책임입니다. 즉 ㉡는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③ :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 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

⇒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 사단성 중 하나인데, 한 사람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는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④ :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

⇒ 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개인과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독립된 주체인데, 이것이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는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

답 ⑤

문제의 원인은 "일인 주주에게 회사는 형식적이고 개인 사업처럼 기능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거래 관계(회사가 개인 사업과 다른 없는 경우에서 거래 진행)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회사의 업무 집행 의결 기관은 애초에 이사회'만'입니다.

② : 법인격 부인론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사용됩니다. 즉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③ : 지문에서는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다, 즉 일인 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지 법인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④ : 개인 이사의 권리 능력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 코멘트

단순히 문제 - 해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닌, 문제의 '원인'과 그에 맞는 '해결'이 따라오도록 인식해야 합니다.

3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②

⇒ 어휘 문항이 나오면, 찾아보는 습관을 갖추시길 바랍니다.